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	--------

제출연월일	2006. 8.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직제개편으로 인한 실과명칭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
⇒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거창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 낫표(「 」)를 사용(안 제1조).
⇒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개정
- 통합방위협의회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를 “행정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작전담당 간사중 “거창경찰서 경비과장”을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제1호).
- 방위지원본부내 동일한 성질의 지원반 삭제(안 제4조제6항).
⇒ 분야별 지원반에서 “총괄지원반”삭제 - 종합상황실과 동일성질의 업무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6. 20)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 타
 - (1)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결과 : 생략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나목중 “경비과장”을 “정보보안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중 “분야별 지원반장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을 “분야별 지원반장은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u>(이하“법”이라 한다)-----.</p> <p>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②(생략)</p> <p>③협의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p> <p>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u>행정과장</u></p> <p>2. 작전담당 간사 가. (생략) 나. 거창경찰서 <u>경비과장</u></p> <p>3. (생략)</p> <p>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p> <p>①~⑤(생략)</p> <p>⑥<u>분야별 지원반장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u></p> <p>⑦(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u>」(이하“법”이라 한다) -----.</p> <p>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u>재난안전관리과장</u></p> <p>2. 작전담당 간사 가. (현행과 같음) 나. 거창경찰서 <u>정보보안과장</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p> <p>①~⑤(현행과 같음)</p> <p>⑥<u>분야별 지원반장은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u></p> <p>⑦(현행과 같음)</p>